

우편취급국 창구 취급시간 변경 고시

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창구 취급시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우편취급국 창구 취급시간 변경

총괄국명	취급국명	창구 취급시간		변경시행일
		변경 전	변경 후	
기장	기장신양촌 우편취급국	09:00 ~ 18:00	08:00 ~ 17:00	2020.11.23.(월)

2. 존속기한 : 이 고시는 변경 시행일 익일(2020.11.24.)까지 유효